내용증명

발신인

법인명:나법인

대표이사:나대표

주소 :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갈공길 14 （서암동） 전화번호 : 02-111-111

수신인

법인명:너법인

대표이사:너대표

주소 :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경천면 갱금길 2 （경천리） 전화번호 : 02-000-000

제목 : 대여금 변제 청구

1. 귀사 （수신인，이하 '귀사’라고 한다） 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본 발신인은 귀사에게 아래와 같이 200,000원을 빌려주었습니다.

＜본 발신인의 대여 내역〉

가. 대여 내역: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3월 1일까지 대여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200,000만운을 빌려줌 （이자는 연3%로）

1. 그러나 귀사는 아래와 같이 일부 변제만 하고, 나머지 원금 120,000원을 변제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.

＜귀사의 변제 내역〉

가. 1차 변제 내역: 2023년 1월 31일 원금 30,000원과 이자 2,000원을 받음

나. 2차 변제 내역: 2023년 2월 28일 원금 50,000원과 이자 1,000원을 받음

1. 따라서 본 발신인은 귀사에게 2024.04.01 까지 본 발신인에게 위 미지급 대여금을 지급변제할 것을 촉구합니다

（예금주: 나법인，입금은행명: 의자은행 은행，계좌번호: 110-110）. 그렇지 아니하면 본 발신인은 귀사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76조 이하 등에 따른 가압류 등 보전 처분 및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민사 소송은 물론 형 법이나 관련 특별법 등에 따른 형사상 고소 및 행정제재 등의 법적 조치를 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. 이 경 우 귀사는 대여금 변제 의무에 따른 원금,지연손해금은 물론,소송비용까지 귀사가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. 게다가 본 발신인이 소송을 제기하면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연 12%가 될 것입니다.뿐만 아니라, 본 발신인은 아래와 같은 상황에 있는바 귀사는 본 발신인에 대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 우, 본 발신인은 귀사에게 아래와 같은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가. 대여금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, 나법인 제품생산이 지연됨, 그로인해, 납품처에 위약금 20만원이 발생함

**2024년 이월 23일**

 **위발신인**

**나법인**

**나대표 (인)**